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0. 7
시 민 도 시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0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74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2000. 10. 7)
상정, 심사,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가. 개정이유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 및 동법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 등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골자

-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구의원, 구공무원,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마포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였음.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였음.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음.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는바 이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것임.

-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및 같은 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이 전문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자격 등을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6조 등에 근거하여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기존 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25인 이내면 20명도 가능한지?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17명 이었으며 20명도 가능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기존 17명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것인지?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예. 환경분야가 필요해서 환경분야를 보충하는 것임.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위임사항이 확대되는 것인지?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예.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회의개최 일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예. 내년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개최할 예정임.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가능한 25명까지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를 충분히 할 것.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 및 동법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등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 (2)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
- (2)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구의원, 구공무원,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다.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근거

- 가.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 제85조 내지 제87조
- 나. 도시계획법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 제80조 내지 제86조
- 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7.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 제16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0.8.30 ~ 9.21)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0.9.2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 의원
2.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④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재개발계획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자의 설명을 들을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